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산 업 과)	국무위원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연 월 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캠핑용 특수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로 간주되어 자가용으로 유상 대여할 경우 동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에 저촉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법상 화물자동차로 규정된 특수자동차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캠핑용 특수자동차를 제외하려는 것임. 또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여사업용 캠핑용 특수자동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제외 (안 제3조)

나.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수자동차”를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중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5호,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4의2 비고 제2호 중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6 비고 제2호 중 “기간”을 “가중처분 적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9호의 경우에는 2년) 이전에 부과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용도형 <u>특수자동차</u> 를 말한다. 이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 ----- ----- ----- ----- ----- ----- -- <u>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로서 같은 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의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제외한다)</u>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